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

고유번호 1211-1996-071523



[집합건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3-246 방주주택 제3층 제4호

【 표 제 부 】 (1동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 1)	1994년4월29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3-246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 4층 다세대주택 1층 155.34㎡ 2층 151.56㎡ 3층 151.56㎡ 4층 140.22㎡ 지층 50.58㎡	도면편철장 제2책144장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05월 12일 전산이기
2	2009년10월19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3-246 방주주택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 4층 다세대주택 1층 155.34㎡ 2층 151.56㎡ 3층 151.56㎡ 4층 140.22㎡ 지층 50.58㎡	신청착오
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3-246 방주주택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263번길 9-1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 4층 다세대주택 1층 155.34㎡ 2층 151.56㎡ 3층 151.56㎡ 4층 140.22㎡ 지층 50.58㎡	도로명주소 2011년12월20일 등기
4		경기도 부천시 중동 3-246 방주주택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 4층	2016년7월4일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열 램 용

[집합건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3-246 방주주택 제3층 제4호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263번길 9-1	다세대주택 1층 155.34㎡ 2층 151.56㎡ 3층 151.56㎡ 4층 140.22㎡ 지층 50.58㎡	인하여 2016년7월4일 등기
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3-246 방주주택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263번길 9-1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 4층 다세대주택 1층 155.34㎡ 2층 151.56㎡ 3층 151.56㎡ 4층 140.22㎡ 지층 50.58㎡	2024년1월1일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2024년1월3일 등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 1)	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3-246	대	411㎡	1994년4월29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05월 12일 전산이기
2	1. 경기도 부천시 중동 3-246	대	411㎡	2016년7월4일 1토지 행정구역명칭변경 2016년7월4일
3	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3-246	대	411㎡	2024년1월1일 1토지 행정구역명칭변경 2024년1월2일

【 표 제 부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건 물 번 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 1)	1994년4월29일	제3층 제4호	철근콘크리트조 34.11㎡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05월 12일 전산이기

[집합건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3-246 방주주택 제3층 제4호

(대지권의 표시)			
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 1)	1 소유권대지권	411분의 27.914	1994년4월18일 대지권 1994년4월29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05월 12일 전산이기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5 1 (전 2)	소유권이전	1995년2월25일 제12254호	1995년1월11일 매매	소유자 김완식 590825-***** 부천시 원미구 중동 3-246 방주빌라 304호
				2번(전순위4번)소유권이전등기말소로 인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3-246 3층 4호 건물등기부에서 전순위 2번등기를 이기 1999년12월13일 등기
1 2 (전 4)	소유권이전	1998년4월20일 제20694호	1998년4월17일 중여	소유자 이순 650915-***** 부천시 원미구 중동 3-246 방주빌라 304호
2 3 (전 5)	가처분	1998년5월4일 제23364호	1998년5월2일 인천지방법원부 천지원의 가처분결정(98 카단7954)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채권자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17-7 (강남지점) 금지사항 매매, 중여, 전세권, 저당 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번 내지 2번 등기를 1998년 05월 12일 전산이기
3 4	가처분	1998년5월16일 제25743호	1998년5월15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가처분결정(98 카단8840)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강서지점) 금지사항 양도, 담보권설정 기타 일체의

[집합건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3-246 방주주택 제3층 제4호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처분행위의 금지
3-1 4-1	3번가처분경정(금지 사항경정)		착오발견	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 1998년9월8일 등기
4 5	1번소유권이전등기 말소	1999년12월13일 제102579호	1999년9월3일 서울지방법원의 확정판결	대위자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17-7 대위원인 1998년 10월 20일자 구상금 청구채권의 보전
6	1번,2번,3번,3-1번, 4번,5번 순위번호경정			2번(전순위4번)소유권이전등기말소로 인하여 1번은 2번으로, 2번은 3번으로, 3번은 4번으로, 3-1번은 4-1번으로, 4번은 5번으로, 5번은 1번으로 경정 1999년12월13일 등기
7	3번가처분등기말소			2번(전순위4번)소유권이전등기말소로 인하여 1999년12월13일 등기
8	강제경매신청	1999년12월16일 제103620호	1999년12월1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 정(99-타경 30577)	채권자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17-7 (강남지점)
9	8번강제경매신청등 기말소	1999년12월31일 제107193호	1999년12월29일 취하	
10	4번가처분등기말소	2000년4월19일 제25909호	2000년4월12일 해제	
11	소유권이전	2002년11월12일 제196635호	2002년10월11일 매매	소유자 박운덕 57081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1 설악단지 302-908
12	소유권이전	2009년5월6일 제46257호	2009년5월6일 매매	소유자 박운자 651020-*****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305-2 동환아파트 1-501 거래가액 금85,000,000원
13	소유권이전청구권	2009년10월8일	2009년10월7일	가등기권자 김창균 530122-*****

[집합건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3-246 방주주택 제3층 제4호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등기	제119124호	매매예약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6 목동현대하이패리온 103-4802
14	소유권이전	2010년6월11일 제58251호	2010년6월11일 매매	소유자 박운덕 57081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3-246 방주주택 -304 거래가액 금85,000,000원
15	13번가등기말소	2013년5월16일 제49980호	2013년5월16일 해제	
16	소유권이전	2021년1월22일 제5531호	2021년1월6일 매매	소유자 이루다 850126-*****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36번길 42, 501호 (심곡동, 삼성하이즈빌) 거래가액 금103,000,000원
17	강제경매개시결정	2025년6월26일 제3276739호	2025년6월2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 정(2025타경338 47)	채권자 한지예 920506-*****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263번길 9-1, 304호(중동, 방주빌라)
18	압류	2025년7월3일 제3445346호	2025년7월3일 압류(자격정수 부-4353)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111471-000886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 2)	근저당권설정	1995년4월7일 제8139호	1995년4월7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26,000,000원 채무자 김원식 부천시 원미구 중동 3-246 방주빌라 304호 근저당권자 부천농업협동조합 124336-0000133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68-7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05월 12일 전산이기
2	1번근저당권설정등	2002년11월12일	2002년11월11일	

[집합건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3-246 방주주택 제3층 제4호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기말소	제196634호	해지	
3	근저당권설정	2009년5월28일 제57447호	2009년5월28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42,000,000원 채무자 박운자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305-2 동환아파트 1-501 근저당권자 안중새마을금고 134744-0001564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272-35
4	3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13년5월16일 제49979호	2013년5월16일 해지	
5	근저당권설정	2013년5월16일 제49981호	2013년5월16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42,900,000원 채무자 박운덕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3-246 방주주택-304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우리은행 110111-0023393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양천구청지점)
6	5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21년1월22일 제5725호	2021년1월22일 해지	
7	주택임차권	2025년8월11일 제4218394호	2025년8월11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임차권등기명령 (2025카임5307)	임차보증금 (1) 금 160,000,000원 (2) 금 160,000,000원 범 위 건물의 전부 임대차계약일자 (1) 2021. 5. 25. (2) 2023. 6. 4. 주민등록일자 2021. 6. 25. 점유개시일자 2021. 6. 25. 확정일자 (1) 2021. 5. 25. (2) 2023. 6. 5. 임차권자 한지예 920506-*****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263번길 9-1, 304호 (중동, 방주빌라)
7-1				7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2025년8월11일 부기

-- 이 하 여 백 --

열람용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기록사항 없는 갑구, 을구는 '기록사항 없음' 으로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 *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주요 등기사항 요약 (참고용)

[주의 사항]

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유번호 1211-1996-071523

[집합건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3-246 방주주택 제3층 제4호

1. 소유지분현황 (갑구)

등기명의인	(주민)등록번호	최종지분	주 소	순위번호
이루다 (소유자)	850126-*****	단독소유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36번길 42, 501호 (심곡동, 삼성하이츠빌)	16

2.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정보	주요등기사항	대상소유자
17	강제경매개시결정	2025년6월26일 제3276739호	채권자 한지예	이루다
18	압류	2025년7월3일 제3445346호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루다

3.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을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정보	주요등기사항	대상소유자
7	임차권설정	2025년8월11일 제4218394호	임차보증금 (1) 금 160,000,000원 (2) 금 160,000,000원 임차권자 한지예	이루다

[참 고 사 항]

-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
-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
-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
-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확인불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